

오산시 시험수당 지급조례

제정 2004년 3월 9일 조례 제 776호
개정 2008년 6월 13일 조례 제 975호
(정부조직법 전문개정에 따른
오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
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)
일부개정 2023년 11월 1일 조례 제2099호
(제명개정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48조제5항에 따라 오산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3. 11. 1>

제2조(시험수당) ① 오산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시험수당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한다. <개정 2008. 6. 13, 2023. 11. 1>

1. 문제의 출제·심사·선정·편집·편찬·채점에 종사하는 자
2.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
3. 시험감독·관리에 종사하는 자

② 오산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3. 11. 1>

제3조(여비)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8. 6. 13 조례 제975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오산시 시험수당 지급조례

부칙 〈2023. 11. 1 조례 제2099호〉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